

의안번호	2217671
의 퇴 인	서왕진 의원
회 답 일	2026. 6. 1.
추계번호	26A14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0.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금 운영 방안	의무규정
2	안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를 확산 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후단 신설) ○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목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안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안 제2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주민 참여에 대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음¹⁾
- 다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연도별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단위: 개소, MW)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태양광	1개소	6개소	32개소	100개소	44개소	46개소	22개소	16개소
	(2MW)	(7MW)	(144MW)	(461MW)	(347MW)	(366MW)	(255MW)	(133MW)
풍력	—	—	1개소	1개소	—	5개소	4개소	4개소
	—	—	(43MW)	(28MW)	—	(129MW)	(153MW)	(241MW)
합계	1개소	6개소	33개소	101개소	44개소	51개소	26개소	20개소
	(2MW)	(7MW)	(187MW)	(489MW)	(347MW)	(495MW)	(408MW)	(374MW)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²⁾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소득 공유와 관련하여 “햇빛·바람·계통 소득 전국 확산” 전략이 제시됨
 - 동 전략은 세부적으로 ①햇빛·바람소득마을 확산, 계통 우선접속 등 인센티브 전폭 지원, ②계통·공공·민간 등 소득 모델을 다각화하여 전국 확산, ③자가용 설비 추가 수익(REGO) 제공,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으로 구성됨

[표 2]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의 재생에너지 소득 공유 관련 과제 및 전략

과제 4.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전략 8. 햇빛·바람·계통소득 전국 확산(재생e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

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산, 계통 우선접속 등 인센티브 전폭 지원

【 햇빛·바람 소득마을 추진방향(비교) 】

구분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바람소득마을(육·해풍)
사업 규모	소규모	소·중규모(육풍, 대부분 100MW 미만) ~ 대규모(해풍, 대부분 100MW 이상)
주요 추진 방안	주민, 농·축산업인 등이 협동조합 통해 직접 추진	지역주민 등이 협동조합 통해 사업 투자
표준 모델	'지역주민 주도'(협동조합)로 소규모 발전사업(마을단위)을 추진하며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에 공동활용 (ex) 구양리)	지역주민 등이 '외부 개발사업자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추가 발전수익을 분배

② 계통·공공·민간 등 소득 모델을 다각화하여 전국 확산

③ 자가용 설비 추가 수익(REGO) 제공,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방안(안)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자가용 요금 절감	
	사업용	자가용		
발전 수익	전력판매(SMP)	요금 절감	요금 절감	
부가 수익	REC 발급·판매		신설 REGO 발급·판매	
	공급의무자	RE100기업		RE100기업
	공급의무이행	실적 활용		RE100 실적 활용

* 단, 정부 보조금 지원설비는 보조금 비율만큼 국가 소유의 REGO로 발급 예정(REC와 유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동 계획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